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예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6823

발의연월일: 2024. 12. 23.

발 의 자:김예지·서미화·김상욱

정성국・고동진・이종배

박정하 • 박덕흠 • 송석준

최수진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은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공중이용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·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를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음.

그러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는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원과 공공건물 등에 대해서만 의무화되어 있고,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인증을 유도하고 있어 지난 16년간 실제 인증을 받은 민간시설은 전체 대상 중 3.1%에 불과함.

이에 편의시설 설치를 통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내국인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민간시설의 인증 비 율을 높이려는 것임(안 제24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4조의2(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세액공제) ① 내국인이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에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같은 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설치금액의 100분의 10(중견기업은 100분의 15, 중소기업은 100분의 20)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(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)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은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.
 -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.
 -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설치금액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세액공
제에 관한 적용례)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
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24조의2(장애인・노인・임산부
	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대
	한 세액공제) ① 내국인이
	「장애인・노인・임산부 등의
	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
	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에 같은
	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
	설을 설치하여 같은 법 제10조
	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
	환경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
	설치금액의 100분의 10(중견기
	<u>업은 100분의 15, 중소기업은 1</u>
	00분의 20)에 상당하는 금액을
	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(사업
	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
	다)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.
	② 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은
	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
	제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
	한다.
	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
	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
	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

<u>야 한다.</u>

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설치금액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